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74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김 현 · 권향엽 · 최민희
이주희 · 윤준병 · 김 윤
이광희 · 임오경 · 정동영
박지원 · 이정현 · 이수진
한민수 · 차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플랫폼”을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등”을 “등과 제2항에 따른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간의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 ----- ----- 플랫폼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 --.</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간의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⑤ ----- ----- <u>등과 제2항에 따른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u></p>
---------------------------------------------------------	-----------------------------------------------------------------------------------------------------------------------